#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◈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1515/1644-1515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suhyup-bank.com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: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

■ 상품특징: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주거래고객 우대 정기예금

## 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(또는 증서), 예금상품계약서,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	구	분		내 용
가	입	대	상	실명의 개인 (1인 1계좌)
가	입	금	액	100만원 이상
상	품	유	형	거치식예금
계	약	기	간	1년
거	래	바이	법	• 신규 : 영업점 • 해지 : 영업점, 비대면(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)
계	약 해	지 방	법	<ul> <li>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</li> <li>단, 영업점 신규계좌의 비대면 채널 해지는 성년인 개인만 가능하며, 본인 명의 수협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.</li> <li>계좌의 만기가 휴일 등 비영업일인 경우 만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 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(단,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)</li> </ul>
기	<u>보</u> (2024.02	금 .19 기준)	리	연 2.40% (세금공제 전 기준)

#### ① **거래고객 우대금리** : 최대 연 0.1%P(최초 신규시만 적용)

(단위 : 세금공제 전 기준, 연, %p)

	(	_, _,,,,,,,
거래우대항목		
항목별	적용기준	우대금리
최초예적금 거래고객	이 예금 신규일 현재 당행의 예·적금을 최초로 가입하는 고객	0.05
재예치고객	당행 예·적금 만기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예금을 가입한 고객	0.05
장기거래고객	이 예금 신규일 현재 수협 CIF(고객정보)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고객	0.05

#### ② **주거래통장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** : 최대 연 0.3%P (만기해지시 적용)

- 이 예금 신규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 동안 고객 본인의 당행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(이 예금 만기일 당시 유효한 계좌)을 통하여 아 래의 거래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

(단위: 세금공제 전 기준, 연, %p)

	거래우대항목		
항목별	적용기준	우대금리	
급여/연금이체등	급여/연금이체 등 <u>입금이체실적<sup>쥐</sup>이</u> 월 50만원이상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	0.1	
수협카드결제	당행 수협카드(신용/체크)결제실적이 월 20만원이상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	0.1	
공과금이체 등	각종 공과금 등 <u>출금이체<sup>주)</sup></u> 건수 별로 우대금리 차등 적용 ○ 1건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 : 연 0.05 ○ 3건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 : 연 0.1	최대 0.1	

우 대 금 리 (최대 연 0.4%P) (2024.02.19 기준)

#### 주) 자동이체항목 (출금이체/입금이체)

- 아래 수협은행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과금, 급여, 연금 등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의 자동이체를 말함

(자동이체로 거래된 실적만 인정하나 입금이체 중 급여이체의 경우 **수협이 인정한** 실**적\***을 포함 )

- \*수협이 인정한 실적
  - ① 고객이 보유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샐러리맨리치예금인 경우
  - ·샐러리맨리치예금에서 인정하는 급여로 입금되는 실적
  - ② 고객이 보유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샐러리맨리치예금 외 기타 요구불 상품인 경우
  - 이 통장으로 통장 입금 시 전산원장에 급여코드로 입금된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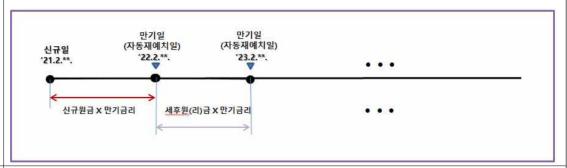
출금이체	입금이체
① 금융결제원을 통한 출금이체	① 수협은행과 급여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입금
(CMS, 지로 등)	② 금융결제원을 통한 입금이체
② 펌뱅킹출금이체	(CMS,지로,대량이체 등)
③ 대량이체출금이체	③ 펌뱅킹입금이체
④ 아파트관리비출금이체	④ 대량이체입금이체
	⑤ 수협공제연금수령금입금이체

# 제 휴 금 리 없음

## 만기이자 산출근거

- 만기이자 :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(약정)금리\*로 계산한 금액
- \* 만기(약정)금리 = 기본금리 + 오대금리
- 이자계산 산식

- 1. 1회차 : 원금(신규금액) × (신규일현재) 만기금리
- 2. 2회차이상 : 원금(세후원(리)금) × (자동재예치일현재) 만기금리



만 기 후 금 리 (2024.02.19 기준)

• 만기일 당시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후금리적용

(단위: 세금공제 전 기준, 연, %)

기 간	이율	비고
만기후 1년 이내	만기일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<b>일반정기예금</b> 기본금리(월이자지급기준)*의 1/2	
만기후 1년 초과	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기본금리*	

• 신규일 당시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적용

중 도 해 지 금 리 (2024.02.19 기준)

	(₽	<u> Ł위</u> : 세금공	제 전 기준, 연, %)
기 간	금리	최저금리	비고
1개월미만	0.1		
3개월미만	0.1		
3개월이상 6개월미만	기본금리×3/약정기간×50%	0.10	금리가
6개월이상 10개월미만	기본금리×경과월수 <sup>/</sup> 약정기간×55%	0.10	최저금리
10개월이상11개월미만	기본금리×경과월수 <sup>/</sup> 약정기간×80%	0.10	미만인 경우에
11개월이상	기본금리×경과월수 <sup>/</sup> 약정기간×90%	0.10	최저금리 적용

- ※ 기본금리 : 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금리(우대금리 제외)
- ※ 경과월수 :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월수로, 1개월 미만은 절사 ※ 약정기간 :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의 월수로, 1개월 미만은 절사
-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

• 계산방법(예시)

중 도 해 지 이 자 산 출 근



※ 위 그림은 적용율, 중도해지개월수,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자를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가 아닙니다.

이 자 지 급 방 식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

	*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.		
연계·제휴서비스	• 해당사항 없음		
예 금 자 보 호 여 부	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
세 제 혜 택	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 가능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		
양도 및 담보제공	• 양 도 : 불가 단,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• 담보제공 : 가능		
일 부 해 지	• 만기해지 포함 3회 가능 (단, 만기 전 일부해지금액에 대해 중도해지금리 적용, 잔액은 최저 가입금액 이상 유지 필수)		
계 약 기 간 연 장	불가		
자 동 재 예 치	<ul> <li>가. 계약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세후원(리)금 자동재예치 함. 단, 비과세 선택 개설시 세후원금으로만 자동재예치함.</li> <li>나. 재예치시 금리는 재예치일 현재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"② 주거래통장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"를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0.3% 제공함다. 재예치 후 만기 전 해지시에는 재예치 후 만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재예치일 당시 기간별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됨</li> <li>라. 관련 세법의 변경으로 세제혜택한도가 변경되거나 세제혜택 한도가 초과시에는 재예치가 불가능 함</li> </ul>		
무 통 장 거 래	가능		
원 금 및 이 자 지 급 제 한	• 계좌에 압류 <sup>주1)</sup> , 기압류 <sup>주2)</sup> , <u>질권설정<sup>주3)</sup></u>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		
휴면예금 및 출연	•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<sup>주시)</sup> 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•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		
위 법 계 약	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		

해	지	권	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자 요	료 열 구	람 권	<ul> <li>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li>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
## 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,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비대면 신규 후 통장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합니다.
-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- 이 상품은 Sh수협은행 개인금융부(1588-1515)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
-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 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〈부록〉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주1) 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주2) 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주3) 질권설정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주4) 출연	<ul> <li>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</li> <li>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</li> </ul>